의안번호	2211073
의 뢰 인	김승수 의원
회 답 일	2025. 6. 30
추계번호	25F3406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4년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비용추계 결과

❑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4년 연장함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는 2027년 1,133억원, 2030년 1,236억원 등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총 4,735억원(연평균 1,184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 및 법인세, 2027~2030년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4년 연장 (안 제25조의6)	−1,133	−1,166	−1,201	−1,236	−4,735	−1,184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5조의6 (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)	○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세액공제 적용기한 4년 연장 –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9.12.31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25조의6 (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❑ 부칙에 따라 개정안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현행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감안하여, 세수효과는 2027년부터 발생할 것으로 가정

○ 현행 제도의 세액공제 적용기한(2025.12.31.)을 고려 시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2026~2029년 귀속분에 대한 법인세 신고는 2027~2030년에 신고됨에 따라 세수효과는 2027~2030년에 발생한다고 가정

❑ 향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에 따라 추계

○ 향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2024년 실적을 기준으로 최근 5년(2017~2022년)간 영상콘텐츠 제작비의 연평균 증가율(3.0%)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가정

- 2024년 지출분부터 공제율이 변경[1]된 점을 감안하여, 과거 감면실적을 현행 공제율 기준으로 환산하여 활용

○ 향후 제작되는 모든 콘텐츠가 추가공제율 적용을 받을 것으로 가정

- 추가공제율 적용 여부는 개별 작품별로 국내 제작비 비율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[2], 동 추계는 모든 콘텐츠가 추가공제율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고 가정

❑ 향후 영상콘텐츠 세액공제를 받는 업체에 충분한 이익이 발생하여 공제율 상향조정에 따라 증가하는 세액공제를 모두 감면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며, 최저한세는 고려하지 않음

❑ 세액공제율 변화에 따른 행태변화는 고려하지 않음

○ 세액공제율 변화에 따라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행태가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하지만, 동 추계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음

---

1) (2017~2023년) 기본공제율(대기업 3%, 중견기업 7%, 중소기업 10%)
→ (2024년 이후) 기본공제율(대 5%, 중견 10%, 중소 15%) + 추가공제율 신설(대·중견 10%, 중소 15%)

2) 국내 제작비 비율이 80% 이상이며, 4개 요건* 중 3개 이상 충족 시 적용 (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2조의10 제4항)
* ① 주요 스태프 인건비의 내국인 지급비율 80% 이상, ② 배우 출연료의 내국인 지급비율 80% 이상, ③ 후반제작비용 중 국내 지출 80% 이상, ④ 주요 IP(방송권, 전송권, 배포권, 2차적 저작물작성권 등) 3개 이상 보유

3. 상세 추계내역

(1) 제도 개요 및 관련 실적

❑ (제도개요) 동 제도는 영상산업의 지원을 위해 2017년 도입되었으며, 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율 등을 중심으로 제도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세제 지원이 확대되는 추세

○ 2017년 도입 이후 공제대상 확대, 공제율 상승 등을 중심으로 제도 개정

– 현행 기업규모별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공제율은 추가공제율 포함 15~30% 수준

※ 공제율(기본+추가): 중소기업 30%, 중견기업 20%, 대기업 15%

[표 2]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주요 연혁

시행시기	주요 개정내용
2017년	□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– 공제대상: 국내에서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– 공제율: 중소기업 10%, 중견기업 7%, 대기업 3%
2022년	□ 공제대상에 해외에서 발생한 제작비용도 포함 – 공제대상: 국내에서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→ 국내외에서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
2024년	□ 공제율 상향 및 추가공제 도입 – 공제율: (기본공제) 중소기업 10 →15%, 중견기업 7→10%, 대기업 3→5% (추가공제) 국내 제작비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이면 추가공제 10%(중소기업 15%) 적용

❑ (감면실적)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실적은 2020년 99억원에서 2024년 257억원(잠정치)으로 증가함

○ 단, 2024년 실적은 2023년 세법개정으로 인한 기본공제율 상향 및 추가공제 도입의 효과가 반영되기 이전의 실적

[표 3]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실적: 2020~2024년

(단위: 억원)

	2020	2021	2022	2023	2024(잠정)
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	99	170	309	320	257

자료: 정부의 「조세지출예산서」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2) 추계방법

❑ (영상콘텐츠 제작비 현황) 영화·방송·애니메이션 등에 대한 전체 제작비 규모는 2017년부터 2.7조원 수준에서 2022년 3.1조원까지 증가

○ 2020~2021년 제작비 규모의 감소는 코로나19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라 관련 산업이 위축된 영향으로 판단

[표 4] 영상콘텐츠 제작비 현황: 2017~2022년

(단위: 억원, %)

	2017	2018	2019	2020	2021	2022	'17~'22 연평균 증감률
영화	4,582	4,986	5,502	2,988	2,423	5,288	2.9
방송[1]	21,210	23,210	23,899	22,338	23,509	25,034	3.4
애니메이션[2]	1,276	454	725	1,510	1,132	994	−4.9
계	27,068	28,649	30,126	26,836	27,063	31,316	3.0

주: 1) 지상파방송·방송채널사용사업·지상파DMB·종합유선·위성방송·위성DMB·IPTV 방송의 제작비
2) 애니메이션 제작비용이 2023년 이후 「콘텐츠산업 통계조사」 조사항목에서 제외되어 제작비용 정보를 알 수 없어 영상콘텐츠 제작비 현황 자료의 최근 자료 부재

자료: 영화산업진흥원 「한국영화산업 결산」, 방송통신위원회 「방송통계포털」, 문화체육관광부 「콘텐츠산업 통계조사」를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❑ ('24년 실적을 현행 공제율로 환산) 국세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공제액의 기업규모별 비중을 적용하여 2024년 실적을 기업규모별로 안분하고 현행 공제율로 환산하여 적용

○ 최근 3년(2020~2022년)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액 기업규모별 연평균 비중은 다음과 같음

- 대기업 53.8%, 중견기업 25.4%, 중소기업 20.9%

○ 2024년 귀속분부터 세액공제율이 변경된 점을 고려하기 위해, 과거의 감면 실적을 현행 공제율 기준으로 환산

- 대기업: 3→15%, 중견기업 7→20%, 중소기업 10→30%

[표 5] 영상콘텐츠 세액공제액 기업규모별 안분: 2024년 잠정실적

(단위: 억원)

	대기업	중견기업	중소기업	계
공제액	138	65	54	257
현행 기준 환산액	691	186	161	1,038

❑ (향후 공제액 추정) 향후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4년 잠정실적이 최근 5년간 콘텐츠 제작비용의 연평균 증가율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
○ 최근 5년(2017~2022년)간 콘텐츠 제작비용 연평균 증가율: 3.0%

(3) 추계결과

❑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4년 연장함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는 2027년 1,133억원, 2030년 1,236억원 등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총 4,735억원(연평균 1,184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6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 및 법인세, 2027~2030년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4년 연장 (안 제25조의6)	−1,133	−1,166	−1,201	−1,236	−4,735	−1,184

Ⅳ. 부대의견

❑ 없음

Ⅴ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신미정	백경엽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신미정	02−6788−4837	mjshin@assembly.go.kr